##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13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 강승규·고동진·박수영

박상웅 • 김소희 • 이철규

권성동 • 이성권 • 김용태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의 범위) 및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함.

그러나 최근 온라인유통이 급성장하고,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일요일 장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변 상권도 같이 침체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광역시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진출한 지역은 이미 새벽배송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 간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방에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 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을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편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축된 국내 유통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전 국민적 소비심리 부양을 통한내수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행사·쇼핑주간 개최 등이 필요한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및 제15조).

#### 법률 제 호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는 통신판매(재화 등의 공급 및 배송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 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시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 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 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 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 ----대형마트(대규모점포 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 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 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다. 이하 같다)-----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 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 ② (생략)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 수 있다. <후단 삭제> 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 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② (생 략) <신 설>

2	(현행과	같음)
$\sim$	`	<u> </u>

 $\overline{(3)}$  --

- 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통신판매 (재화 등의 공급 및 배송을 포 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 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③</u> · <u>④</u> (생	략)	
------------------------	----	--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